

■ ‘Say on Pay’ 조항 도입에 따른 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의 변화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이른바 ‘Say on Pay’ 조항이 도입된 이후 미국 기업들이 고위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줄이고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¹⁾이 보도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hareholder advisory votes on executive compensation 혹은 “Say on Pay”)은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기업의 경영진 보수에 대해서 주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 처음 이 개념을 제시한 영국은 2002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후 호주와 스웨덴에서도 이를 입법화하여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 조항은 2010년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R. 4173), 이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으로 약칭)이 마련된 이후, 올해 1월 25일 ‘도드-프랭크’ 법 개정을 통해 미국에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주들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보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 임원 보수에 대한 투표 결과를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주주들은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서 표결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들은 주총 전에 경영진의 보수 관련 정보를 ‘위임장권유신고서’를 통해

해의 동향

¹⁾ Financial Times, 2011.4

주주들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주주들은 지급 계획에 관한 정보 공개를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Say on Pay’ 조항을 통해 주주들은 인수 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이른바 황금 낙하산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다.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 이를 제안한 사람이 대상회사나 인수회사의 이사, 주주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이를 위임장 서류에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약정의 승인에 있어서는 주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보수지급관행과 관련하여 기업보상 컨설팅업체인 클리어브리지가 최근에 실시한 조사²⁾에 따르면 대기기업의 경영진 보수지급 관행이 ‘Say on Pay’ 조항 도입 이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2위 이동통신사 기업인 AT&T, 세계 1위 미디어그룹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사, 사무용품 업체 오피스맥스(OfficeMax) 등을 포함한 40개 기업은 ‘Say on Pay’ 조항 도입 이후 경영진에게 조건부로 부여해 온 세금 우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기기·금융서비스 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은 CEO인 제프 이멜트(Jeff Immeldt)에게 지급하기로 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주주들의 비판이 높아 지자 스톡옵션 지급방법을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제프 이멜트는 2013년에 절반을 지급받은 후 2015년에 나머지 절반을 지급받기로 했던 2백만 달러의 스톡옵션을 2015년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성과목표를 달성시킨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뉴욕타임즈가 기업보상 컨설팅업체 이퀄라(Equillar)에 의뢰하여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요기업 CEO들의 연봉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M,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등 미국 내 주요 200개 기업의 2010년도 CEO 평균 연봉은 960만 달러(104억 원)로 2009년 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에 따르면 S&P500지수에 상장된 299개 회사 CEO들은 지난해 평균 1140만달러(약 123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직원의 평균

²⁾ 포춘 500대 기업의 상위 100개사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주주에게 보낸 ‘위임 설명서(proxy statement)’를 분석함

연봉 3만3190달러보다 약 343배 많은 액수이다.

연봉의 최고 수혜자로는 비아콤(Viacom) CEO인 필립 다우먼(Philippe Dauman)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어난 84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옥시덴털 페트롤리엄(Occidental Petroleum)의 CEO인 레이 이라니(Ray Irani)는 142% 늘어난 7610만 달러를 받았고, 오라클(Oracle) CEO 로렌스 엘리슨(Lawrence Ellison)은 7010만 달러를 받았다. 이밖에도 스탠리블랙 앤드 덕커(Stanley Black & Decker)의 존 룬드그렌(John Lundgren)가 253%가 증가한 3257만 달러를 받았고, 에머슨 일렉트릭(Emerson Electric)의 데이비드 파(David Farr)가 233% 증가한 229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이와 같이 미국 주요기업 CEO들의 연봉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전년 대비 기준으로 약 29.3% 이상 증가한데에 기인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지난해 승인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ay on Pay’ 조항 도입을 통해 경영진 보상에 대한 주주의 발언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강제성의 미비로 그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도드-프랭크’ 법의 규제화 작업 지연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R. 4173), 이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으로 약칭)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금융시장 개혁 작업의 산물로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 이래, 미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식체계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 미국의 주요한 금융개혁법

-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of 193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 분리(글래스-스티걸법은 그램-리치-브릴리법에 의해서 사실상 폐지됨)
- 1999년 그램-리치-브릴리법(Grann-Leach-Bliley Act,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 1999): 은행의 증권업 겸업을 허용(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은 여전히 유효)
 - 2002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2002년 엔론 및 월드컴을 비롯한 주요회사의 회계스캔들에 대한 대응으로 회계책임 등을 강화

330만 단어, 3,5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도드-프랭크’ 법은 이를 규제화 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도드-프랭크법의 규제 중 약 62%는 아직 제안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영진 보상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과 은행 예금보험금 상향조정을 포함한 21개 규제만이 완료된 상태이다. 감독 당국은 의회가 정한 마감기한 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제도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작업 중인 30개 규제와 그 외에 145개 규제가 올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개혁법 규제 완료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생상품 하위 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IB)들은 불만을 속속 제기하면서 동시에 파생상품관련 규제 시행을 연기시키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는 파생상품은 거래가 불투명하고 신용위험이 높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IB)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그 거래가 연간 600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외 스왑거래를 증권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house)를 통해 표준화된 파생상품을 청산·결제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정 금융회사의 경우 적정 담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의 하위 규정은 7월 16일까지 마련 예정이다.

그러나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연간 수익에서 수십억의 매출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최근 애틀랜타에서 열린 국제 은행가 컨퍼런스에서 미국 정부의 금융개혁이 금융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마저 가로막고 있다며 지적했다. 월가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월가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싱가포르거래소(SGX) 새로운 상장기준 제시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Stock Exchange, SGX)와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ASX)간의 합병시도는 지난 4월 호주 정부가 SGX의 낮은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결렬됐다. 이에 지난 금요일 SGX는 국제 기준에 조금 더 부합하는 새로운 상장 기준을 제시했다. 새로운 상장기준에 의하면 SGX에 최초로 상장된 모든 기업은 연차총회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해야 하며, 위임 투표는 거수가 아닌 투표로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는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SGX는 작년 10월 ASX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84억 달러를 제시했었다. 이에 ASX는 SGX의 운영자를 만나 인수합병에 합의했었으나 호주 정부가 국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함으로써 두 기관의 합병은 무산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호주 정부가 자국 기업이 연관된 M&A를 불허한 것은 지난 2001년 로열더치셸의 우드 사이드페트롤리엄 인수 거부에 이어 두번째이다.

ASX와 SGX가 통합되었을 경우 ASX-SGX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147억 달러 정도로 전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증권거래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지난 2월에는 독일 증권거래소(도이체보르제)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유로넥스트를 95억3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260억 달러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각 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15조 달러에 이르며, 도이체보르제와 NYSE 유로넥스트는 두 거래소의 합병으로 연간 4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의 합병은 향후 각각 주주들의 승인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캐나다 토론토증권거래소(TSE) 운영회사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운영 그룹이 포괄적 주식교환 형태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런던증권거래소(LSE)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SE) 운영사 TMX 그룹도 합병에 합의했다. 도쿄 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도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글로벌콤팩트 회원 가입현황(2011.5.30 기준)

5월 한 달 동안, 126개의 기업과 30개의 비영리 기관이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반면, COP(Communicate on Progress)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76개의 기업은 글로벌콤팩트 회원에서 제외되었다.

COP(Communication on Progress)란 기업을 포함한 참여자가 해당 사업 활동에서 글로벌콤팩트의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소비자, 고용인, 노동조합, 주주, 언론, 정부 등)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보고서를 말한다. 글로벌콤팩트 참여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유엔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 등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COP를 제출해야 한다. COP는 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을 위한 활동 내역과 성취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참여기업 및 단체가 연간 보고서나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이전부터 발간하고 있었다면 COP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 없이 COP 보고서와 해당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발간하면 된다.

2011년 5월 기준 글로벌콤팩트 가입현황(누적)은 다음과 같다.

- 영리기업 : 6,195개
- 비영리 기업 : 2,722개
- COPs 수용 기업 : 11,415개
- 회원명단에서 제외 : 2,393개

■ “유엔글로벌콤팩트 위크”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본부는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위크’ 주간을 마련하여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연차 총회, 로컬 네트워크 총회, 제반 이슈 미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위크”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로컬 네트워크 실무 대표들이 모여 연차 총회, 로컬 네트워크 총회, 로컬 네트워크 지역 회의, UNGC 이슈별 실무자 회의에 참여하였다.

ESG 관련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

| 7월의 행사 |

- 16 Jun. – 6 Jul., online, Human Rights and Labour Webinars, UN Global Compact, www.globalcompact.org
- 21 Jun. – 10 Jul., online, COP Differentiation: Achieving “GC Advanced” Level, UN Global Compact, www.globalcompact.org
- 12 Jul., Brussels, Belgium, The Sustainable Company: changing the way our corporations are governed in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nd society, ETUI, www.etui.org
- 14–15 Jul., Boston, Massachusetts, USA,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Conference (CGBC), Academy of Business & Retail Management, Journal of Business and Retail Management Research & London College of Management Studies, abrmr.com/bostonconhome.html
- 21 Jul., online, Introduction to the Human Rights and Business Dilemmas Forum: Spotlight on Community Relocation, UN Global Compact, www.globalcompact.org
- 31 Jul. – 2 Aug., California, USA, Integrating Risk Adjustment & Quality Measures Summit, Financial Research Associates, LLC., www.frallc.com

| 8월의 행사 |

- 9–10 Aug., Singapore, Singapore, ICMM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anking & Finance, Asian Institute of Research, www.airpak.org/CFinance.html
- 29– 31 Aug., Orlando, FL, USA, The IIA's 2011 Governance, Risk, and Compliance (GRC) Conference,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IIA), www.theiia.org

| 9월의 행사 |

- 27-28 Sep., Kuala Lumpur, Malaysia, CSR Asia Summit 2011 Kuala Lumpur Malaysia, CSR Asia, www.csr-asia.com/summit2011
- 15-16 Sep., Paris, France, 2011 ICGN Annual Conference Paris, ICGN, www.icgn.org

편집팀